

2022. 6. 2.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7월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7. 14.(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고
1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윤○○ (법무법인 덕수 외 5)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사형제 사건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14:00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2. 6. 2.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존속살해,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28. 선고 2018고합158, 159(병합), 200(병합), 2018전고8(병합) 판결].
- 청구인의 변호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41조 제1호,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 등의 결정을 받게 되자(2018초기659), 2019. 2. 1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3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63 판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41조 제1호, ②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단심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헌법적으로 규율하는 기술적 성격의 조항이므로,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헌법조항이 사형제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쟁 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범죄에 한하여 사형제를 존치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범죄 일반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며, 또한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사형 집행 과정에 법관이나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공익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므로, 사형제는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 사형제는 이미 범죄가 종료되어 상당기간이 지난 후 수감 중인 수형자를 상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 것이므로,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타인의 생명이나 이에 준하는 공익에 대한 급박한 위협은 이미 종료된 후이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승인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응보라고 할 수 없고, 특별예방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제는 다른 형벌에 비하여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거나, 사형제의 존치가 극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한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간의 목숨 그 자체를 수단으로 삼는 사형제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후일 오판임이 판명되더라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도 사형제는 적절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은 종신형 또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
- 사형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사회의 질서유지와 사회방위인데, 사형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생명권 그 자체이다. 범죄자의 생명과 비교되는 공익인 사회의 질서유지는 매우 막연한 것이고, 사형제에 의하여 얼마나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도 논증된 바 없다. 사람의 생명 박탈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모두 현재 긴급한 상태 하에서 동일하거나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뿐인데, 사형의 집행은 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사형제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 사형제의 존속 여부가 선진국 또는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사형제의 존폐는 엄연히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조건 및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다. 유럽 각국을 비롯하여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재판기관의 결정이 아난 헌법 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가 폐지되었다는 점은 사형제의 폐지 여부는 국민과 입법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여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한, 객관적 정의감정에 근거한 응보의 발로로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 형벌의 일반적 범죄예방기능에 근거한 사형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사형을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가 안정되고 치안이 양호한 상태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사형폐지에도 범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 사형의 범죄 억지력이 통계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성 및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다. 흉악범죄에 한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인정되고, 또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형제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오관 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 및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와 그 개선을 통해 해결여야 할 문제이다.
- 범죄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등이고, 나아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사형 선고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형제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로서, 그 죄가 가지는 패륜성 및 비난가능성은 일반적인 살인에 비하여 더 크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사형을 법정형으로 둔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주요 쟁점

-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형태, 박수진), 법무법인 한맥(담당 변호사 좌세준), 변호사 남승한, 문현웅, 김현재, 심현주
-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 참고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측의 추천을 받아 추후 지정될 예정

□ 이 사건 변론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현재 1996. 11. 28. 95헌바1에서는 재판관 김진우의 위헌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 현재 2010. 2. 25. 2008헌가23에서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재판관 김희옥의 위헌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이 각 있었고, 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의 보충의견,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재판관 송두환의 보충의견도 있었다.

- 사형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1992. 5. 12.(89헌마36, 90헌바13) 및 2009. 6. 11.(2008헌가23)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사형제는 형사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논제, 학계에서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사형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헌법적 쟁점 및 그에 관련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